

종합감사

청렴·**한**·세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운영시설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2020. 6. 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실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1
2. 감사 중점 및 대상	1
3. 감사 실시 과정	2
4. 감사 결과 처리	2

II. 감사 대상 업무 현황

1. 사업 및 예산	3
2. 운영시설 계약 현황	3

III. 감사 결과

1. 총 평	4
2. 지적사항 총괄	5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6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7

I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 201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나주 혁신도시로 이관 후 서울 소재 문화예술시설인 ①&&&&&&&&&, ②■■■■&&&&, ③■■■■■■■, ④QQQQQQQQQ-## QQQ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업무전반에 대해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점검함으로써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등 점검하였다.

2. 감사중점사항

○ 본 감사는 2019.1.1.부터 2019.11.30.까지 4관 운영시설에서 수행된 업무 전반을 감사범위로 정하였으며, 이전 감사에 따른 유사·반복·지적사항과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 현황 점검 등을 비롯하여 아래의 사항 등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시설명	개별사항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업무 집행·관리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목적물 확인 및 목적물 활용 상황 - 계약금액의 적정성 확인 - 계약방법의 적정성 검토 - 불법 하도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실태 등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불용액 현황 점검 -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문화예술진흥기금 집행지침 준수 여부 검토 - 예산비목 편성 위배 및 예산목적외 사용 여부 등 ○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 등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카드 사용내역 검토 및 지출결의서와 대사 ○ 예술위 법인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 운영 여부 및 실태

3. 감사기간 및 인원

- 예비조사 : 2019.12.2.(월) ~ 12.6.(금) / 5일간
- 실지감사 : 2019.12.9.(월) ~ 12.20.(금) / 10일간 (※ 공휴일 제외)
- 감사반 및 사무분장

구분	성명	업무분장	비고
감사반장		○ 감사업무 총괄	외부 감사관
감사1반		○ 공통감사 사항	외부 감사관
		○ 아르코미술관 감사	내부 감사관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감사	내부 감사관
감사2반		○ 공통감사 사항	외부 감사관
		○ 예술기록원 감사	외부 감사관
		○ 인력개발원 감사	내부 감사관

4. 감사결과 처리

○ 감사결과 위법·부당 사항과 관련하여 2020.1.22.~1.23. 2일간 4관시설 부서장 및 내외부 감사관과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당초 실시감사 종료 후 19.12.23~12.24. 감사마감회의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외부 감사인들의 다른 일정과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한 추가 확인 사항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1개월 연기하였다.

○ 이후 2020.2.24.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및 지적사항에 대해 예술위원회 상임감사 김선출, 감사자문위원 신광조, 임두택, 선흥규 3명이 참석하고, 감사반장(외부감사인) 및 감사실장 등이 배석하여 감사결과심의회의를 거쳐 처분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감사결과 중 계약업무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 필요의견(특정업체와 과도한 거래에 따른 비위행위 여부, Q-##Q-## 등 주차장 요금 등 수입금 누락 여부 등 검토)에 따라 2개월 기간 추가적인 점검을 하고 감사결과를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 업무 현황

1. 사업 및 예산

○ 시설별 사업 현황

구분	주요사업
	- QQQ-##QQQ-##QQQ-## 운영
	- QQQ-##QQQ-##QQQ-## 기획 및 운영
	- QQQ-## 운영
	- &&&▲▲▲ &&&▲▲▲ &&&▲▲▲
	- &&&▲▲▲ &&&▲ ■■■&■■■&&& 등 운영
	- &&&▲▲▲, &&&▲▲▲
	- MMMMMM, MMMMMM
	- ■■■&&&■■■&&& 지원
	- MMMMMMMMMMMM 운영

○ 예산 및 지출 현황 (2019.1월~11월 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집행	잔액
	1,575	1,179	396
	1,238	920	318
	2,598	1,798	800
	13,801	12,794	1,007
계	19,212	16,691	2,521

2. 운영시설 계약현황 (※2019년 1월~11월 말 기준)

○ 총 계약 현황

계약금액	계약건수	평균금액	비고
1,887백만 원	111건	17백만 원	당해 연도 계약금액 기준

○ 시설별 계약 현황 (수의계약 비중 총 건수 대비 85%)

구분	수의계약		일반경쟁		입찰		조달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0	516	6	79	-	-	3	228	59	823
	17	175	1	18	-	-	1	11	19	204
	12	140	1	73	2	142	2	253	17	608
	15	226	1	26	-	-	-	-	16	252
계	94	1,057	9	196	2	142	6	492	111	1,887

Ⅲ. 감사 결과

1. 총평

○ 이번 종합감사는 2019.1.1.부터 2019.11.30.까지 4관 시설의 주 기능·주 업무·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업무를 조사·판단하여 그 업무가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예방·지도·법규해석적인 통제행정측면에서, 엄격한 기준 적용에 따른 규제의 성격보다 지원적 성격을 강조하여 4관시설의 당초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10년 넘는 동안 종합감사를 실시한 이력이 없었고, 기관의 통합 등 업무 환경과 인적 변화에 따라 ‘사업운영의 안정적 시스템 정착’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책·법령·재무·회계분야 외부 전문 감사인 4명과 함께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점점으로 감사품질을 제고 하였다.

○ 종합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4개 시설 전체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 금액은 1,887백만 원으로, 계약 건 수는 111건, 평균 17백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전체 계약의 85%인 94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반면,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 건 수는 9건에 불과하는 등 수의계약 비중이 높아 사업부서 및 계약담당부서의 업무처리 방식 개선이 요구되었고,

○ 예산의 편성·사용에 있어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비목별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아니하고 일부 세목에 포괄적으로 계상하여 결국, 회계처리 왜곡을 확산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요구되었다.

○ 또한, 고정자산의 관리·계리 기록, 관리 유지운영에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을 명확

하게 규정화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및 지침 마련이 요구되었고, 자료수집 역시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었다.

○ 마지막으로 감사에 지적된 문제점의 근본적인 문제는 업무수행 관계자들의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및 이해부족을 들 수 있겠으며, 전임자의 업무처리절차방식을 답습하거나 놓치는 사례가 있었고, 일부에서는 업무방치 및 업무소홀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가 요구되기도 하였다.

○ 아울러, 종합감사를 마감하는 과정에서 외부 민원 증가와 내·외부 요구자료 대응, 인사이동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게 마무리 되었다.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백만원)

합계			변상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환수)	감액	기타						
13건	8명	-	-	-	-	-	-	-	6명 (8건)	3	1	1	-	-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 요구 사항 일람표

일련 번호	처분내용	처분종류	조치사항
1		통보 (시정완료)	‘MMMMMM’ 계약 체결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해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방지를 위하여 통보
2		권고	‘MMMMMM’ 임차솔루션 운영을 예술위가 운영하는 자체 서버를 통해 관리로 예산 절감 및 보안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방안 검토
3		주의요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 2명에게 ‘주의(훈계)’ 촉구
4		개선요구	MMMMMM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차장 운영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할 것
5		주의요구	MMMMMM 수익금 운영·관리 및 책임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 2명에게 ‘주의(경고)’ 촉구
6		주의요구	예산 집행 및 계약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담당자에게 ‘주의(훈계)’ 촉구
7		개선요구	MMMMMM 보존 및 수집, 관리 등 명확한 관리를 위한 지침 등을 마련하거나, 『미술관 운영규정』을 개정 등 개선 필요
8		주의요구	MMMMMM 관리 및 기록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담당자에게 ‘주의(훈계)’ 촉구
9		주의요구	부적절한 계약처리 등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자에게 ‘주의(훈계)’ 촉구
10		주의요구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자에게 ‘주의(훈계)’ 촉구
11		개선요구	MMMMMM 자료수집에 대한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관련지적사항	처분내역			
	조치양정	소속	직위/직급	성명
○ 용역·공사·물품구매 등 업무처리 부적절	주의 (훈계)		前)부장 (3급)	
○ M M M M M 주차장 운영 및 관리, 관리감독 소홀	주의 (경고)		부장 (4급)	
○ M M M M M 운영 및 관리, 관리감독 소홀	주의 (경고)		차장 (4급)	
○ 용역·공사·물품구매 등 업무처리 부적절	주의 (훈계)		부장 (4급)	
○ M M M M M 관리업무 소홀 ○ 예산집행 및 계약업무 처리 부적절	주의 (훈계)		차장 (5급)	
○ 계약업무 및 예산집행 부적절 관리감독 소홀 ○ 예산 편성·집행 부적절 관리감독 소홀	주의 (훈계)		부장 (4급)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2. 감사 증빙자료(별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주의 · 권고 · 통보(시정완료)

제 목 &&&&& 용역·공사·물품구매 등 업무처리 부적절
 소 관 부 서 &&&&&, &&&&&
 조 치 부 서 &&&&&, &&&&&
 내 용

1. 업무 개요

&&&&&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급증에 따라 모바일 접근성을 확대하여 &&&&&극장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 권장 웹 가이드(웹 표준,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 스마트시스템’을 매년 계약을 체결을 통하여 유지관리 하고 있다. 2019년 스마트 서비스 시스템의 ‘홈페이지 운영현황’ 및 ‘시스템 운영 현황’은 아래의 [표 1] , [표 2] 와 같다.

[표 1] 홈페이지 운영 현황

구분	홈페이지	모바일 웹	대관단체	비고
도메인	theater.arko.or.kr	mtheater.arko.or.kr	partnertheater.arko.or.kr	
회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20,597명 - 일반 19,809명 - 마니아회원 35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예술인 437명 - 휴먼회원 31,206명 	1,387명	2019.3.6.기준
방문자수	241,001명	-	-	2018.1.1 - 12.31

[표 2] 시스템 운영 현황

구분	명칭	내용	주소
사용자 시스템	홈페이지	티켓예매, 공연정보 제공, 회원 가입 등	theater.arko.or.kr
	모바일 웹	티켓예매, 공연정보 제공, 회원 가입 등	mtheater.arko.or.kr
	대관시스템	대관신청 및 공연등록, 티켓판매 정산, 극장관련 자료 다운로드 등	partnertheater.arko.or.kr
관리자 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	공연일정, 업무일지, 보고서 관리, 누리집/모바일 웹 관리, 회원관리 등	tmstheater.arko.or.kr
	티켓발권 운영시스템	티켓예매 및 현장발권 시스템	servicetheater.arko.or.kr

또한 &&&&&&&&&&&은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①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②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③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④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⑤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 효과를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산회계규정』 제64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은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질과 목적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

① 스마트 서비스 시스템 용역 계약 체결의 경우

‘스마트 서비스 시스템’ 관리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살펴보면 ① 2019.1.31. ‘19년 공연장 스마트서비스시스템 임차솔루션 운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19년 공연장 스마트 서비스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운영’ 역시 같은 날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된 계약 내역은 아래의 [표 5] 와 같다.

[표 5] 스마트 서비스 시스템 계약체결 내역

계약내용	금액(원)	계약기간	업체명	비 고 (계약사유)
스마트서비스시스템 임차 솔루션운영	27,000,000원	2019.1.1. ~ 12.31. (12개월)	(주)컬처닷컴 (대표 김기홍)	○계약사유 : 위원회 회계규정 112조4항(3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에 의거 계약을 체결함. *시스템 구축업체의 솔루션을 사용하여 운영 중임으로 구축업체와 솔루션업체의 분리가 어려운 환경. (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자로 업체 자체개발 솔루션을 활용한 시스템임)
스마트서비스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운영	16,080,000원			
계약금액 (2건)	43,080,000원			

사업담당자의 업무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일반경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동일 업체에 과업을 분리하고 예술위원회 『회계규정』 제112조 제4항의 수의계약 조건을 근거하여 3천만 원 이하로 금액을 낮춘 다음 이를 같은 시기에 분할 발주하였다.

그런데 ‘스마트 서비스 시스템’은 ‘통합시스템’이므로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를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고, 더군다나 용역 수행업체인 ‘■■■■■■■■’은 ‘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관계법령 및 규정(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조건(5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굳이 분리 발주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아울러 ‘스마트서비스시스템 임차솔루션’의 경우, IDC서비스(서버호스팅, DB사용, 인터넷 접속, 보안서비스) 명목으로 매월 60만 원 가량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지만, ‘(주)컬처닷컴’이 운영하는 서버는 ‘스마트 서비스 시스템’ 만을 위한 단독 서버가 아닌 관계로 ‘개인정보 접속기록 솔루션’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프로

그럼 설치가 불가하여 보안상 우려가 있고, 외부서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DB사용’과 ‘인터넷 접속’ 비용을 감안한다면 향후 IDC서비스를 예술위원회 자체서버를 사용하여 월 720만 원 가량의 사업예산을 절감시키고 관련 보안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② QQQ-## QQQ-## 방수공사의 경우

QQQ-## QQQ-##의 방수층 부풀음, 들뜸, 균열, 파손, 건물옥상의 해결되지 않는 누수현상으로 인하여 실시한 방수공사 계약 체결 내역을 점검한 결과, 2018년(3회)과 2019년(1회)에 동일한 업체에 총 4회에 걸쳐 방수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계약체결 내역은 아래의 [표 6] 과 같다.

[표 6] QQQ-## QQQ-## 방수공사 계약체결 내역

(단위 : 원)

계약일	계약건명	거래처	계약금액
2019-08-07	&&&▲▲▲▲ 업무시설 상부옥상 방수공사	&&&	18,502,000
2018-11-08	&&&▲▲▲▲ 1층 화단 방수공사	&&&	18,940,000
2018-10-01	&&&▲▲▲▲ 3층 식당 누수 방수공사	&&&	4,700,000
2018-07-24	&&&▲▲▲▲ 장치 반입구 옥상 및 QQQ-## QQQ-# 5층 캐노피 방수공사	&&&	9,800,000

그러나 QQQ-## QQQ-## 방수하자와 누수문제는 건축물의 장기적 안전성을 저해하거나, 내구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사용 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바, ① 누수가 발생할 때마나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것보다 총괄적인 관리 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② 수의계약을 통하여 동일 업체에 지속적으로 방수공사를 실시한 경우 위에서 설명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위반에 해당되므로 관련자에게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며, ③ 예산

행정소요 기간이 단축되지만 반면, ② 계약담당자에 의한 자의적 운용이 가능하고 동일한 업체와 여러 건의 공사 계약으로 다른 업체의 참여 기회를 저해하며 소액공사 설계의뢰가 어렵고 공사(구매)금액이 높은 경우 예산에 맞춘 공사(구매)로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목적의 공사(구매)를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 발주하여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하고 경쟁을 통해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계약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

‘스마트 서비스 시스템’의 경우, 전임자 퇴직 및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의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할계약을 추진하였으나, 향후 시스템 유지보수와 서버임차를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방수공사의 경우, 많은 고객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다 보니 누수가 발생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시기 조정과 기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방수 공사를 실시하였다면서 향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괄적인 계획에 의하여 관리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음향장비시스템 구매의 경우, 의도적으로 분할 발주한 것이 아니라 공연일정 등 현장의 시급성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서 향후 용역, 물품, 공사 계약체결 시 관계 법령과 지침 따른 계약방식 준용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 ① 앞으로는 관련법령 및 규정과 위배되게 계약처리가 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훈계)’를 촉구하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자]

◇ 前)■■■■■■■■■■ %%% @@@(QQQQQQQQQQ)

◇ ■■■■■■■■■■ %%% ####

- ② 2019년 ‘스마트서비스시스템’ 계약 체결 감사결과 지적 내용에 대하여 2020년 ‘스마트서비스시스템’ 계약 체결 시 시정이 완료 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통보(시정완료)]**
- ③ 향후, ‘스마트서비스시스템’ 임차솔루션 운영이 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자체 서버에서 관리되어 예산을 절감시키고, 관련 보안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개선 · 주의 요구

제 목 ▲▲▲ 주차장 운영·관리 미흡
소 관 부 서 ▲▲▲
조 치 부 서 ▲▲▲, #####
내 용

1. 업무 개요

▲▲▲▲▲▲▲▲▲▲▲▲▲▲▲▲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파견 인력(4명)을 각각 배치하여 방문객의 주차 안내와 이용시간에 따른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 부설주차장 요금표는 아래의 [표1]와 같다.

[표 1] ▲▲▲▲▲▲▲▲▲▲▲▲▲▲▲▲ 주차 요금표

구분	처음30분	초과 (15분마다)	공연관람객 (4h=3,000원)	국가유공자, 장애인(50%)	1일권	비고
@@@예술극장	2,000	1,000	3,000	일반요금의 50%	20,000	일반
%%%예술극장	2,000	1,000	3,000	일반요금의 50%	20,000	기계식

2. 관계 규정 등(판단 기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2호에 따르면,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록물관리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록물법』 제16조 (기록물 생산의 원칙)에 따라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록관장은 위원회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남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무관리규정』 제11조에 따르면, 문서의 모든 절차는 전자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조에서는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위임전결규정』 제1조에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5조 별표 제2호에서는 위임전결 내용을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

이번 감사에서는 ▲▲▲▲▲▲▲▲▲▲ 부설주차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주차요금(수입금)에 대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에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 부설주차장 총 수익금은 441,030,052원 이며, 이에 대한 주차요금 수입 현황은 아래의 [표2], [표3] 과 같다.

[표2] 2018년 ▲▲▲▲▲▲▲▲▲▲ 주차수입 현황

(단위 :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총 수익금
25,528,821	18,645,986	17,789,622	20,907,173	19,873,516	19,118,002	228,480,11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8,380,489	22,323,030	12,186,805	18,812,451	16,163,710	18,750,505	

[표3] 2019년 ▲▲▲▲▲▲▲▲▲▲ 주차수입 현황

(단위 :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총 수익금
20,864,243	15,015,956	16,411,153	16,196,181	20,084,512	17,894,319	212,549,942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2,197,115	19,243,081	12,437,850	17,283,521	19,476,138	15,445,873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금 업무처리절차는 KKK부 주차시설 담

당자가 일일 정산보고와 매월 정산보고를 통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수입을 보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실에서는 일일 정산보고와 매월 정산보고와 관련된 서류와 영수증을 대조·분석하고 담당자(KKK)의 대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수입과 관련된 기본적인 회계자료의 붙임자료(영수증)를 기록물로 생산하지 않았고, ② 주차관리요원이 1차 정산한 영수증 등 맞는지를 정확히 검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입 처리하여 주차장의 입차와 출차 기록이 불일치하고 현금 및 카드결제금액에서 차액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③ 또한 이러한 일일정산 보고를 본인 전결로 처리하고, ④ 본인이 담당하였던 해당 기간의 주차장 수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일정산 일지와 증빙자료(주차 영수증, 일일총괄표 등)를 자의적인 판단으로 폐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① 주차장 정산보고 과정에서 기록물에 모든 과정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공공기록물법』 제16조의 기록물 생산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② 문서의 모든 절차를 전자 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지 않아 『사무관리규정』 제11조에 위배되는 점, ③ 수입(금) 보고는 ‘부서장 또는 본부장의 전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인 전결로 처리하여 『위임전결규정』을 위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차 수입처리 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면 기록물로 판단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합함에도, 이를 관리 또는 검토 결재하는 그 행위 등 직무 관련자들은 업무에 소홀히 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지난 2019년 3월 4일자 발령 이후(3월 20일경부터 업무시작) 12월 9일까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존 관례적 행위로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차수입과 관련된

증빙(일지 및 영수증 등)을 폐기한 것은 당시 ■■■MMM의 창고(문서고)를 비우라는 지시를 받은 터라, 당시 창고(문서고)에 비치되어 있던 영수증 등을 폐기한 것으로 고의적으로 문서를 없앨 목적은 아니었다고 하면서 향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 ① 예술극장장으로 하여금 앞으로는 주차장 수입금 등이 부적절하게 관리 및 보고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부설주차장 수익금 운영·관리·책임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경고)’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주의]**

[관련자]

◇ &&&&&& ■■■ @@@
◇ &&&&&& ■■■ %%%

- ② 극장의 주차요금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차장 운영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주 의 요 구

제 목 ▲▲▲ 예산집행 및 계약업무 부적정
소 관 부 서 ▲▲▲(#####)
조 치 부 서 ▲▲▲, #####(#####)
내 용

1. 업무 개요

▲▲▲▲는 서울 동숭동 대학로 위치한 ‘▲▲▲▲(▲▲▲▲)’과 ‘&&&&(#-#####-#####)’, ‘QQQQQQQQQQ(#####)’ 3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은 시각예술 사업 확산의 플랫폼, 동시대 시각예술 창작의 생산거점 및 실험성과 국제성을 지닌 시각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목표로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비고
		전시장 2개, 수장고, 아카이브 등	단독 건물
		세미나실 3개, 회의장, 공연아카이브 등	단독 건물
		전시장 3개	단독 건물

2. 관계 규정 등(판단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 지침』,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 사업유형별·비목별 집행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관련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공사·물품구매·용역 등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수하여 계약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

①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미준수

▲▲▲▲▲는 2019년 예술가의 집 환경개선 공사와 옥상 배수로 방수공사를 하면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비목별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공사내역은 아래의 [표1] 과 같다.

[표 1] ■■■■■■ 공사 내역

(단위 : 원)

세목명	계약명	계약일	계약금액
일반수용비	##### (화장실 등) 환경 개선 공사 계약	2019-08-19	18,000,000
시설장비유지비	##### 옥상 배수로 정비 및 일부 방수공사(1) 계약	2019-11-21	8,368,600
일반수용비	##### 옥상 배수로 정비 및 일부 방수공사(2) 계약	2019-11-21	5,631,400
계	3건		32,000,000

그러나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공사(대규모 수선비 포함)의 경우에는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으로 집행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집행하였다.

② 수의계약 업체 선정 부적정

기획전시와 관련하여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자인 제작, 공간조성, 설치공사, 물품구매 등을 특정업체인 ‘&&&&&’ 과 총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내역은 아래의 [표 2] 와 같다.

[표 2] 동일업체(■■■■■) 계약내역

(단위 : 원)

계약일	계약내용	계약금액
2019-07-05	■■■■■ 간판 디자인 및 제작 계약	7,600,000
2018-06-04	2018 ■■■■■ 중진작가전 공간 조성 업체 계약	17,100,000
2018-09-14	2018 ■■■■■ 주제기획전 공간 조성 업체 계약	15,100,000
2018-11-01	■■■■■ 사무공간 환경 개선 가구 구매 및 설치공사 계약	9,430,000
2017-05-08	2017 ■■■■■ 중진작가전 공간 조성 업체 계약	7,300,000

그러나, 계약에 참여한 '■■■■■'은 디자인 전문 업체로, ① 기획전시 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 또는 관련 물품 제작 등의 경우, 업체의 전문성이 인정되나 ② 가구와 같은 기성품 구매나 시설물 공사의 경우에는 '디자인 서클'과 같은 전문 디자인 전문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 ③ 또 다른 관점에서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한 업체에 과도하게 과업을 몰아주려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과업의 내용에 따라 관계된 전문업체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의 품질·안정·공정 등에 있어서 효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는 감사결과에 대해 기획전시를 위해서는 전시공간 디자인과 시설물 설치 등이 필요하며 전시작가가 현장에서 변경을 요청하는 등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여 협력이 용이한 업체를 통해 추진할 밖에 없었다면서, 그 외 시설물 공사 등은 전문업체를 통해 추진하고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① ▲▲▲▲으로 하여금 앞으로는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위배되지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훈계)’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자]

◇ ▲▲▲▲▲▲▲▲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개선 · 주의 요구

제 목 &&&& 소장품 관리 소홀 및 관련규정 미흡
 소 관 부 서 #####(■■■■■■■■)
 조 치 부 서 @@@@, #####(■■■■■■■■)
 내 용

1. 업무 개요

■■■■■■의 소장 작품은 총 396점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체 또는 통일부 등 외부기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작품은 163점이고 ■■■■■■■■■■■■■■■ 수장고에는 233점을 보관하고 있으며, 소장 작품 총 396점에 대한 대장가격(소장 당시 기준)은 1,353,985,000원이며, 2019.5월에 보험가입을 위한 작품가격(감정가격)은 총 397점 2,036,400,000원이다. 이에 대한 아르코미술관 소장 작품 내역은 아래의 [표1] 과 같다.

[표1] ▲▲▲▲▲▲ 소장 작품 현황(2019.12월 기준)

(단위 : 점, 원)

총 작품수	내·외부대여	수장고	작품 대장가격	작품 보험가입
397	162	235	1,353,895,000	2,035,400,000

내부대여		외부대여		▲▲▲▲▲ 수장고
부서명	작품수	기관명	작품수	
	15		28	235
	16		23	
	12		8	
	2		12	
	6		40	
	51		111	

2. 관련규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운영규정』 제33조에 따르면, ##### 책임자¹⁾는 소장 작품이 망실,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소장작품 관리, 처분에 관하여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정자산 관리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으로서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고정자산 관리지침』 제3조에서는 고정자산은 ‘위원회가 관장하는 자산 중 사용연수 5년 이상으로서 그 취득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와 취득금액이 50만 원 미만으로 별도로 정하는 물품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유형자산과 투자자산으로 구분’하고, 동 지침 제4조 제1항 5호에 미술작품을 유형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고정자산 관리지침』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고정자산에 대한 총괄책임자는 재무관리부장을, 고정자산을 사용·이용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관리책임자로서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하여야 하며, 동 지침 제10조에 따라 총괄책임자는 고정자산의 취득·처분 및 변경, 계리 및 감각상각 등을 관장하며 관리책임자는 고정자산의 관리·계리 기록, 관리 유지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장작품 대여는 『▲▲▲ 운영규정』 제36조(대여의 대상), 제37조(대여의 결정), 제38조(대여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라 처리하며, 『고정자산 관리지침』 제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미술작품의 임대 및 사용허가는 ‘미술작품 수집 및 관리요령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 운영규정 제2조 제1항에는 2016.1.18. 이후 조직개편 등에 따른 규정 개정을 하지 않아 아르코미술관 총괄하는 책임자(부장)이 시각예술부 부장으로 잘 못 기술되어 있음.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

① 소장 작품 유지관리 업무 부적정

▲▲▲▲▲▲ 소장 작품 관리 실태를 살펴본 결과, ① 2019년 9월 &&&&&&으로부터 반납된 작품과 ■■■■■ 미등록 작품 등 2018.12월 이후부터 소장 작품 현황을 정리·기록하지 않고, ② 외부기관에 대여하고 있는 남북회담본부 등 5개 소장작품에 대해서는 작품관리 상태 및 파손·분실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에도 2016.12월 점검 이후 3년이 지난 2019.9월에 점검하는 등 소장작품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③ 『@@@ 운영규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소장작품 대여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대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 한 후 대여기간 연장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작품의 관리 상태 및 파손·분실여부의 확인 없이 기간을 연장한 사실 또한 추가로 확인되었다.

② 소장 작품에 대한 보존·수집·관리 규정 등 제도 미흡

■■■■■ 소장 작품 보존 및 수집,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① 『&&&& 운영 규정』 제33조에 의거, 관리책임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 등이 명시된 지침 등이 부재하며, ② 『고정자산 관리지침』 제22조 제1항에 의거, 미술작품의 임대 및 사용허가는 ‘&&작품 수집 및 관리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사항에 대한 지침 또는 규칙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의 경우 상세한 사항이 기술된 작품수집·관리 규정 및 작품보존 규정 등을 통해 소장 작품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은 소장 작품 반출 및 반입, 대여 기준과 대여방식·절차, 소장 작품 점검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된 지침이 부재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 운영규정』은 2016.1.18. 이후 규정이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고, 이에 따라 동 규정 제2조 제1항에는 현재까지도 ##### 책임자가 ‘시각예술부장으로 명시 되어 있기도 하고, 소장작품 관리 관련 조문의 경우 지난 2007년, 2008년 개정 이후 지난 10년간 관련 조문이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부장과 업무담당자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소장 작품의 경우 관련 전문가를 통해 관리되어야 하지만, 현재 부서의 인력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향후 소장 작품의 파손, 훼손 발생 시 보험처리 등 이행토록 하는 등 소장 작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 ① 앞으로는 소장 작품 관리 및 기록 등 자산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 ② 소장품의 보존 및 수집, 관리 등 명확한 관리규정 등이 부제함에 따라 『고정자산 관리 지침』 제22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 운영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라며, [개선]
- ③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담당자에게는 ‘주의(훈계)’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자]

◇ ##### ■■ QQQQ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주 의 요 구

제 목 MMMM 계약업무 및 예산집행 부적정
소 관 부 서 MMMMMM
조 치 부 서 #####, MMMMMM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시설인 MMMMMMMMMMM(■***■***)은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일반 공연장과 차별화된 교육·실습용 공연장인 실험무대, 무대제작·보관 등을 위한 무대미술스튜디오, 이론 교육 및 교육생 숙박을 위한 창조관 3개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시설명	준공연도	시설 규모	용도
	1992년	총 면적 : 1,784.53 m ² / 4층	사무실, 강의실, 숙소
	1992년	총 면적 : 1598.85 m ² / 3층(지하 포함)	공연/무대 교육장
	2005년	총 면적 : 1480.25 m ² / 2층	무대작화·제작, 디자인 등

2. 관계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 물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

사업담당자의 업무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아르코시설 내 석면철거 공사의 경우 ① 일반 경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아르코시설 내 석면철거와 원상복구 공사내역을 분리하고, ② 예술위원회 『회계규정』 제112조 제4항의 수의계약 조건을 근거하여 3천만 원 이하로 금액을 낮춘 다음 ③ 이를 같은 시기에 분할 발주하였고,

창조관 실험무대, 무대미술스튜디오 방수공사의 경우, ① 위와 마찬가지로 일반경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공사내역을 분리하고, ② 예술위원회 『회계규정』 제112조 제4항의 수의계약 조건을 근거하여 3천만 원 이하로 금액을 낮춘 다음, ③ 이를 동일 업체에 분할 발주하였다. ④ 음향녹음실 재정비 공사의 경우 또한, 비슷한 시기에 같은 목적의 공사를 분할하여 동일 업체에 발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MMMMMMMMMM @@@ 과장과 @@@ 대리는 본인이 입사 후 처음으로 공사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하여 관련된 법령과 규정에 대해 숙지가 미흡하였고, 향후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은

- ① 앞으로는 관련법령 및 규정과 위배되지 않게 계약처리가 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 ②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훈계)’를 촉구하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자]

◇ ■■■■■■

MMM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주 의 요 구

제 목 @@@@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소 관 부 서 @@@@(#####)
조 치 부 서 @@@@, #####
내 용

1. 업무 개요

#####은 『###_#####』를 통하여 국내 문화예술 전문인력(무대예술전문인력 및 문화행정·기획·경영 전문 인력 등) 현장 재직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1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등(판단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 지침』,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 사업유형별·비목별 집행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관련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

#####은 『###_#####』사업 추진을 위해 ###_##### 이러닝 과정 기능 개선비용과 교육비 납부 홈페이지 개편 비용을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은 아래 [표1] 과 같다.

[표 1] ■■■■■■■■■■ 이 러닝 과정 기능개선 및 홈페이지 개편 계약 비용 지급 내역

(단위 : 원)

결의일자	계약 구분	계약건명	지급액 (단위 :원)	결의자	세목(내역)
2019-12-20	단건	MMMMMM 사업 MMMMMM2019년도 이 러닝 과정 기능개선 비용 지급	15,200,000		일반수용비
2019-03-28	단건	MMMMMM 대규모기업 근로자 교육비 납부 관련 홈페이지 개편 계약	4,656,000		일반수용비

또한 ##### 정문 출입차단기 교체공사와 실험무대 대관용 프로젝터 교체공사를 하면서 이를 모두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은 아래 [표2] 와 같다.

[표 2] 차단기 교체 및 프로젝터교체공사 비용 지급 내역

(단위 : 원)

결의일자	계약 구분	계약건명	지급액	결의자	세목(내역)
2019-11-13	단건	사업 MMMMMM2019년도 이 러 차단기 교체공사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5,000,000		일반수용비
2019-11-13	단건	사업 MMMMMM2019년도 이 러 실험무대 교육 및 대관용 프로젝터 교체공사 계약의 회	17,500,000		일반수용비

위에 나열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조사·연구 등을 위촉받아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행하는 전산용역의 경우 일반수용비(210-01목)가 아니라 연구개발비(260목)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사무용품 구입비 등),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등은 일반수용비(210-01목)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으므로,

① ##### 사업의 경우, 일반수용비로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이 아닌 사업의 목적이나 성질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 차단기 교체공사는 건물 및 건축설비의(구축물, 기계장치) 시설물의 유지 보수에 해당되므로,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으로 집행함이 타당하다.

③ 대관용 프로젝터 교체공사는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이 되는 공구·기구·비품, 기타 물품구입에 해당됨으로,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① ##### 이러닝 과정 기능개선 및 홈페이지 개편 계약 비용의 경우, 관련 예산이 연도 말에 급작스레 떨어져 적정항목에 계상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일반수용비’로 일괄 편성 후 지출하여 예산항목에 대한 적정성은 미처 살피지 못하였고, 향후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② 차단기 교체공사와 대관용 프로젝터 교체 공사의 경우,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재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행위로 향후 비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의견을 제시 하였다.

5.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은

- ① 앞으로는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등을 위배되게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 ②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훈계)를 촉구하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자]

◇ ##### MMMM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개 선 요 구

제 목 MMMM 소장자료 수집 규정·세부지침 부재
소 관 부 서 MMMMMMMM
조 치 부 서 MMMMMMMM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MMMMMMMM(이하 ‘@@@@@’)은 국내 최초의 예술기록보존 전문기관으로서 예술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여 예술창작과 연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소장 자료를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문헌정보실, 영상음악실, 보존실, 데이터 구축실 등)과 예술가의 집에 분원(@@@@@)을 운영하고 있다.

MMMMMM은 2019년 1월까지 문화예술과 관련된 도서, 영상, 음악 등 총 377,737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구술채록 사업을 통해 공연 162건, 시각 97건, 대중 15건, 영화 5건 등 총 315건을 채록하고 1980년부터 2018년까지 약 2,100편의 공연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문화예술자료를 수집·보존 및 대민 서비스를 하고 있다.

2.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규정인 『MMMMMMMMMMMM 운영규정』 제6조(자료수집의 범위) 3항에서는 자료수집에 관한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을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제정하지 아니하고 한국문화

예술위원회로 재통합 전인 ‘MMMMMMMMMM 자료수집 정책(2012.12월)’과 재통합 이후 일부 내용이 수정된 ‘##### 지침(요약/2018.9.5.)’을 통해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규정 관리지침』에서는 제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등 관리운영에 따른 세부사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라 자료수집에 관한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을 시행세칙 또는 지침으로 규정화함으로써 업무의 명확성과 정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 운영규정』 제12조 제2호, 제14조, 제18조 조문에는 이전 시설명칭의 축약 문구인 ‘관외’가 그대로 사용되어 규정 해석 시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3.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은 자료수집 범위에 대해 세부사항을 규정화 하지는 않았으나 ##### 내부 지침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자료수집의 세부기준 및 범위 설정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인력·예산 등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화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운용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의 자료수집에 대한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개선]